

 건설교통부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들 Trust Builder		보 도 자 료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
		배 포 일 시	2007. 12. 28(금)/ 총9매	
담당 부서	지역발전정책팀	담당자	• 팀 장 김영훈, 사무관 호순철 • ☎ (02)2110-8492, hosch@moct.go.kr	
보 도 일 시		2007년 12월 3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권·전북 해양·농경 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복원을 통한 우리 문화의 우수성 입증 및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 -

- 건설교통부는 12월 31일 경북 동해안권과 전북 해양·농경 역사문화권 특정지역을 각각 지정·고시하였다.
- “동해안권”은 경북 포항·경주·영천시, 군위·청송·청도·영덕·울진·울릉군 등 3시 6군 일원 3,005㎢을 지정하고, “해양·농경 역사문화권”은 전북 정읍·김제시, 고창·부안군 등 2시 2군 일원 1,066㎢을 지정하였다.
 - 두 지역은 지난 해 6월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의 신청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가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 경북 동해안권 특정지역 지정은 신라문화 등 세계적인 역사 문화자원을 발굴·정비하고, 해안권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동 지역이 역사문화체험 및 해양·생태관광의 중추지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해 지역을 남·북부권, 내륙권 및 해양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정신문화 창달, 문화유적 정비, 관광휴양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전북 해양·농경 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은 해양·농경문화적 특성 외에 절의(節義)문화 및 민족사상 등 지역이 보유한 독창적인 문화적 특성을 살려 문화창달 기반을 구축하고, 서해안권의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해 지역을 복합해양관광레저, 역사문화 및 농경문화 중심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농경역사문화 정비, 관광레저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두 곳은 내년 중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국비와 지방비 지원 외에 사업특성에 따라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1】 특정지역 지정 개요

【참고 2】 특정지역 위치도

【참고3】 특정지역 제도 개요

【참고 1】

특정지역 지정 개요

□ 경북 동해안권 특정지역

- 위치 및 지정면적 : 경상북도 경북 포항·경주·영천시, 군위·청송·청도·영덕·울진·울릉군 등 3시 6군 일원
3005.87km²

구 분	행정구역 면적(km ²)	특정지역편입현황	
		편입면적 (km ²)	편입행정구역(km ²)
경상북도	19,025.96	3005.87	
포항시	1,127.69	713.05	죽장면(52.42), 송라면(59.40), 청하면(78.21), 흥해읍(104.40), 연일읍(25.85), 대송면(32.62), 오천읍(70.50), 장기면(100.27), 동해면(43.62), 신광면(80.17), 구룡포읍(45.16),대보면(20.43)
경주시	1,323.85	242.53	진천읍(55.86), 산내면(14.55), 내남면(8.72), 감포읍(49.12), 양북면(24.32), 양남면(85.10), 서면(4.86)
영천시	920.29	400.47	자양면(89.45), 임고면(88.04), 고경면(120.61), 북안면(71.17), 완산동(5.14), 남부동(26.06)
군위군	614.15	172.16	의흥면(54.15), 산성면(36.77), 고로면(16.44), 부계면(64.81)
청송군	842.42	229.57	진보면(24.10), 청송읍(71.10), 부동면(102.49), 부남면(31.88)
청도군	696.52	353.75	화양읍(43.17), 청도읍(90.01), 매전면(89.07), 금천면(71.93), 운문면(59.54)
영덕군	740.95	468.50	병곡면(36.34), 창수면(31.16), 영해면(20.05), 축산면(50.92), 영덕읍(53.57), 강구면(27.81), 달산면(72.92), 지품면(102.46), 남정면(73.27)
울진군	989.06	353.28	북면(142.10), 죽변면(18.36), 울진읍(81.22), 근남면(39.67), 원남면 (16.41), 기성면(31.00), 평해읍(2.51) 후포면(2.84), 온정면(19.17)
울릉군	72.55	72.55	울릉군 전체

□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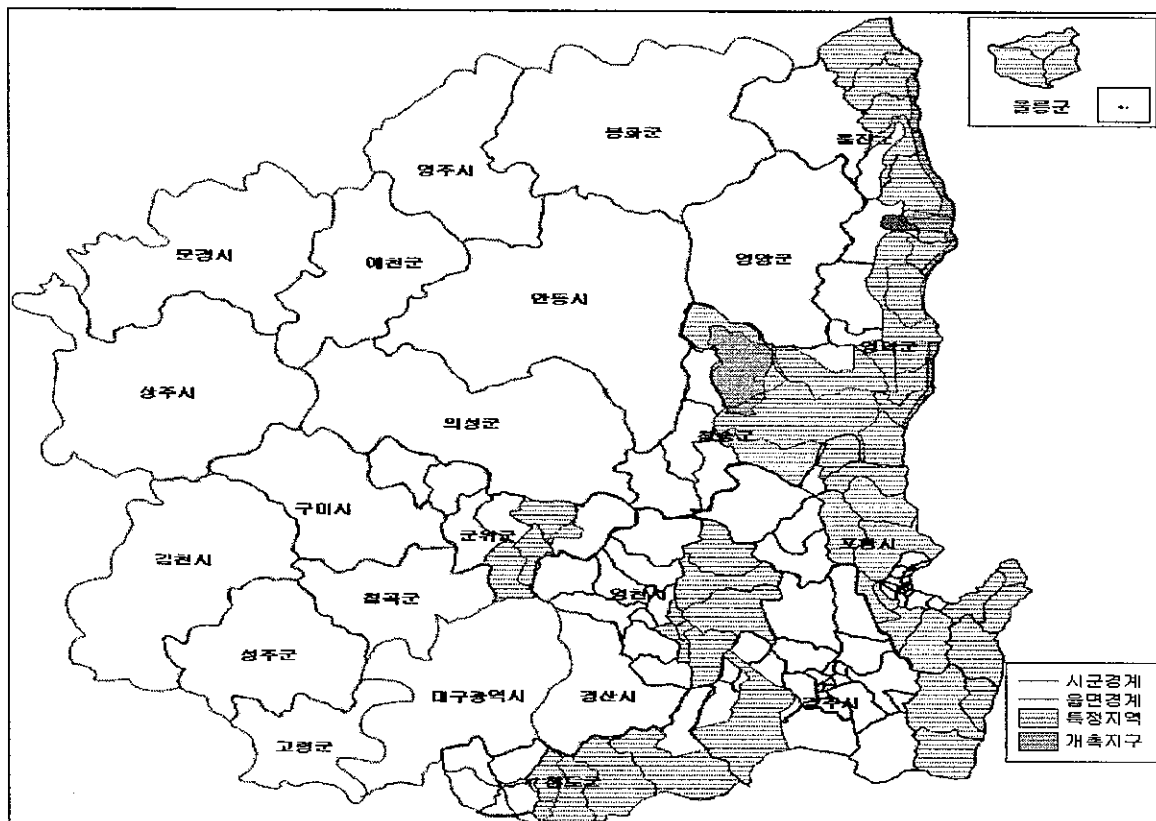
- 위치 및 지정면적 : 전라북도 전라북도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4개 시·군 일원 1,066.433km²

구 분	행정구역 면적(km ²)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편입현황	
		편입면적(km ²)	편입 행정구역(km ²)
전라북도	8,050.650	1,066.433	2시 2군 3읍 26면
김제시	542.200	122.940	만경읍(24.01) 죽산면(36.80) 부량면(20.12) 청하면(19.79) 성덕면(22.22)
부안군	493.208	361.550	부안읍(24.84) 주산면(24.73) 행안면(20.13) 보안면(41.50) 변산면(85.20) 진서면(39.73) 백산면(36.48) 상서면(51.53) 줄포면(23.14) 위도면(14.27)
정읍시	692.801	90.710	고부면(40.01) 영월면(24.95) 이평면(25.75)
고창군	606.822	491.233	고창읍(45.504) 고수면(45.577) 아산면(74.738) 무장면(43.778) 공음면(50.046) 상하면(32.961) 해리면(39.494) 성송면(36.249) 심원면(39.230) 홍덕면(33.361) 부안면(53.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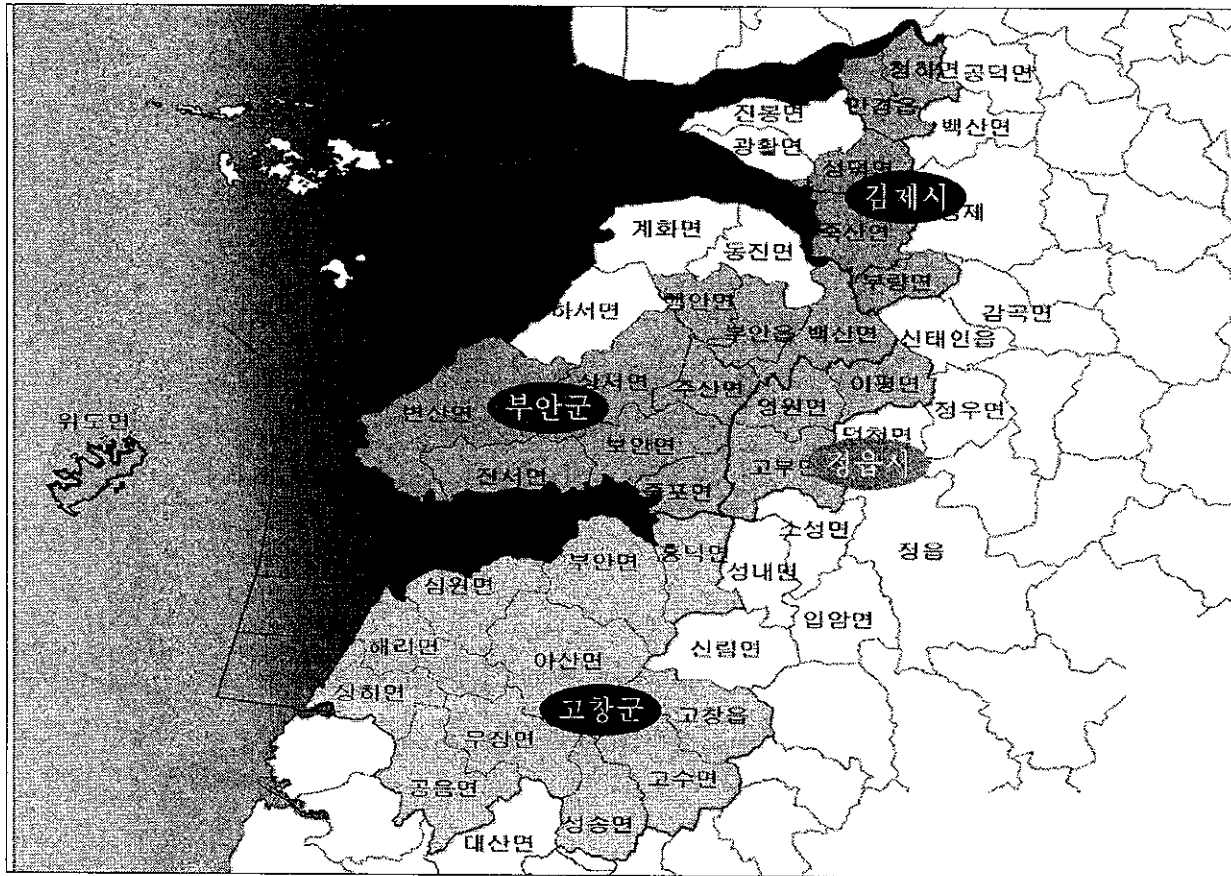
【참고 2】

특정지역 위치도

□ 경북 동해안권 특정지역



□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징지역



【참고 3】

특정지역 제도 개요

□ 목 적

- 주요산업 및 기반시설의 이전·쇠퇴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지역,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등의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 개발

□ 유형 및 지정기준

○ 문화관광형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자연환경적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연계개발함으로써 지역통합성을 높이면서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형
- 역사유적·민속자원·종교유산 등 특정한 주제를 지니는 문화자원이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나타나거나, 수려한 산악 및 해안자연자원이 공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등을 1개소 이상 포함하고 있는 곳을 지정한다.

○ 산업전환지대형

- 전통적인 지역산업이 쇠퇴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종합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연계개발이 가능한 지역형

- 인구대비 제조업 또는 광업부문의 고용비중이나 전 산업에 대한 제조업 또는 광업부문의 고용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지역으로 지역지정 요청시 최근 3년간 인구대비 제조업이나 광업의 고용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감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특수입지형

- 특정시설의 입지나 정치·경제·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지역형
- 발전소·다목적댐 등 자원공급을 위한 특정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주민 및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거나 고속전철 역세권, 공항·항만·도청의 이전 등 특정시설의 입지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배후지역,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 특정지역 지정효과

○ 개발사업비 재정지원

- 도로 개설 및 정비,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정비, 소득기반 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등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지원

○ 절차간소화 등 행정지원

-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농지전용 등 인·허가 의제처리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 사업자(지역개발법인은 민간투자자 출자비율이 50%이상)는 대상 토지의 2/3 이상 매입,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 필요

《특정지역 업무처리 흐름도》

